[찾아 오시는 길]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편한세상 삼척교동 **총 723세대**

주택형㎡	총 세대수	비고
59	242	•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1㎡= 0.3025평 입니다.
74A	113	
74B	75	
74C	71	
74D	19	
84A	168	
84B	30	
84C	5	

문의전화 : **033)573-2999**

분양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현장주소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145번지 일원
모델하우스주소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3-1번지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 **시공사 :** 대림산업㈜ **위탁사 :** ㈜건우디앤씨

※ 본 홍보물 상의 내용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www.daelim-apt.co.kr

e편한세상 삼척교동

스케일이 다르다, 브랜드가 다르다
삼척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www.daelim-apt.co.kr

NAVER e편한세상 삼척교동

삼척교동_입주자모집공고_1506011_출고re.indd 1-2 2015-06-11 오후 8:56:11

e편한세상 삼척교동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건우디앤씨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2014년 12월 29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통한 사전 체험을 권함)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11) 현재 주택의 공급지역을 삼척시 및 강원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순위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삼척시)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5.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2015.06.08)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 인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先納)이 인정되지 않고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 우선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삼척시 건축과-14137호 (2015. 6.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 145번지 외 19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 총 7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227세대 - 일반 69세대, 다자녀 69세대, 신혼부부 69세대, 노부모 20세대)
- 실사용 대지면적 29,674.0000㎡ 중 아파트 지분 면적 26,442.0000㎡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원)

구 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라인/층별 구분	라인별 세대수	해당 세대수	해당층수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 도 금						잔금(30%)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합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15.10.23	2회(10%) 2016.3.25	3회(10%) 2016.8.25	4회(10%) 2017.1.25	5회(10%) 2017.6.23	6회(10%) 2017.11.24	입주지정일
다자녀가구	2015000700-01	59.8769	59.8769	21.4485	81.3254	21.8345	103.1599	30.2062	106동 1,2호 라인 30-35층	12	102	36	30-35층	25,495,932	146,604,068	172,10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17,210,000	51,630,000
									108동 1,2,3,4호 라인 30-35층	24													
									107동 1,2호 라인 20층 108동 1,2,3,4호 라인 20-29층	42		66	20-29층	25,495,932	143,904,068	169,400,000	16,940,000	16,940,000	16,940,000	16,940,000	16,940,000	16,940,000	50,820,000
									106동 1,2호 라인 20-29층 107동 1호 라인 21-24층	24													
									106,107동 1,2호 라인 5-19층	60	140	120	5-19층	25,495,932	141,704,068	167,200,000	16,720,000	16,720,000	16,720,000	16,720,000	16,720,000	16,720,000	50,160,000
									108동 1,2,3,4호 라인 5-19층	60													
									106,107동 1,2호 라인 2-4층	12		20	2-4층	25,495,932	131,504,068	157,000,000	15,700,000	15,700,000	15,700,000	15,700,000	15,700,000	15,700,000	47,100,000
									108동 1,2,3,4호 라인 3-4층	8													
	2015000700-02	74.7748 A	74.7748	26.3777	101.1525	27.2672	128.4197	37.7218	102동 1,2호 라인 30-35층	12	113	12	30-35층	31,839,545	181,360,455	213,200,000	21,320,000	21,320,000	21,320,000	21,320,000	21,320,000	21,320,000	63,960,000
									102,103동 1,2호 라인 20-21층	8		29	20-29층	31,839,545	179,260,455	211,10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63,330,000
									102동 1,2호 라인 22-29층 103동 2호 라인 22-26층	21													
									102,103동 1,2호 라인 5-19층	60		60	5-19층	31,839,545	173,160,455	205,0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1,500,000
									102,103동 1,2호 라인 2-4층	12		12	2-4층	31,839,545	160,860,455	192,700,000	19,270,000	19,270,000	19,270,000	19,270,000	19,270,000	19,270,000	57,810,000
	2015000700-03	74.5290 B	74.5290	26.4684	100.9974	27.1775	128.1749	37.5978	103동 3호 라인 30-35층	6	75	6	30-35층	31,734,882	181,065,118	212,80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63,840,000
									101동 2호 라인 20-29층	10		20	20-29층	31,734,882	179,065,118	210,800,000	21,080,000	21,080,000	21,080,000	21,080,000	21,080,000	21,080,000	63,240,000
									103동 3호 라인 20-29층	10													
									101동 2호 라인 5-19층	15		43	5-19층	31,734,882	172,865,118	204,60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61,380,000
									102,103동 3호 라인 5-17층 103동 3호 라인 18-19층	28													
									102,103동 3호 라인 2-4층	6		6	2-4층	31,734,882	160,665,118	192,40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57,720,000
	2015000700-04	74.5123 C	74.5123	26.2994	100.8117	27.1714	127.9831	37.5893	103동 4호 라인 30-35층	6	71	6	30-35층	31,727,771	180,672,229	212,400,000	21,240,000	21,240,000	21,240,000	21,240,000	21,240,000	21,240,000	63,720,000
									101동 3호 라인 20-26층	7		17	20-29층	31,727,771	178,672,229	210,400,000	21,040,000	21,040,000	21,040,000	21,040,000	21,040,000	21,040,000	63,120,000
									103동 4호 라인 20-29층	10													
									101동 3호 라인 5-19층	15		42	5-19층	31,727,771	172,572,229	204,30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61,290,000
									102,103동 4호 라인 5-16층 103동 4호 라인 17-19층	27													
									102,103동 4호 라인 2-4층	6		6	2-4층	31,727,771	160,272,229	192,000,000	19,200,000	19,200,000	19,200,000	19,200,000	19,200,000	19,200,000	57,600,000
	2015000700-05	74.8038 D	74.8038	27.0787	101.8825	27.2778	129.1603	37.7364	101동 1호 라인 20-23층	4	19	4	20-23층	31,851,893	182,848,107	214,700,000	21,470,000	21,470,000	21,470,000	21,470,000	21,470,000	21,470,000	64,410,000
									101동 1호 라인 5-19층	15		15	5-19층	31,851,893	174,548,107	206,400,000	20,640,000	20,640,000	20,640,000	20,640,000	20,640,000	20,640,000	61,920,000
	2015000700-06	84.6585 A	84.6585	29.0945	113.7530	30.8714	144.6244	42.7078	104동 3호 라인 30-34층 4호 라인 30-31층	7	168	23	30-35층	36,048,082	203,651,918	239,700,000	23,970,000	23,970,000	23,970,000	23,970,000	23,970,000	23,970,000	71,910,000
									105동 1호 라인 30-33층 105동 3,4호 라인 30-35층	16													
									104,105동 3,4호 라인 20-29층	40		50	20-29층	36,048,082	201,351,918	237,400,000	23,740,000	23,740,000	23,740,000	23,740,000	23,740,000	23,740,000	71,220,000
									105동 1호 라인 20-29층	10													
									104동 1호 라인 5-10층 105동 1호 라인 5-19층	21		81	5-19층	36,048,082	194,451,918	230,500,000	23,050,000	23,050,000	23,050,000	23,050,000	23,050,000	23,050,000	69,150,000
									104,105동 3,4호 라인 5-19층	60													
									104,105동 1호 라인 4층	2		14	2-4층	36,048,082	180,651,918	216,70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65,010,000
									104,105동 3,4호 라인 2-4층	12													
	2015000700-07	84.2922 B	84.2922	29.3907	113.6829	30.7378	144.4207	42.5230	105동 2호 라인 30-33층	4	30	4	30-33층	35,892,109	203,707,891	239,600,000	23,960,000	23,960,000	23,960,000	23,960,000	23,960,000	23,960,000	71,880,000
									105동 2호 라인 20-29층	10		10	20-29층	35,892,109	201,407,891	237,300,000	23,730,000	23,730,000	23,730,000	23,730,000	23,730,000	23,730,000	71,190,000
									105동 2호 라인 5-19층	15		15	5-19층	35,892,109	194,507,891	230,400,000	23,040,000	23,040,000	23,040,000	23,040,000	23,040,000	23,040,000	69,120,000
									105동 2호 라인 4층	1		1	4층	35,892,109	180,607,891	216,500,000	21,650,000	21,650,000	21,650,000	21,650,000	21,650,000	21,650,000	64,950,000
	2015000700-08	84.5391 C	84.5391	30.3521	114.8912	30.8278	145.7190	42.6476	104동 2호 라인 5-7층	3	5	3	5-7층	35,997,240	196,802,760	232,800,000	23,280,000	23,280,000	23,280,000	23,280,000	23,280,000	23,280,000	69,840,000
									104동 2호 라인 3-4층	2		2	3-4층	35,997,240	182,802,760	218,800,000	21,880,000	21,880,000	21,880,000	21,880,000	21,880,000	21,880,000	65,64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시공 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양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 기타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충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반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 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이 경우 최초에 계약된 단가를 기준으로 입주전까지 상호정산하기로한다
(단, 세대별 대지지분이 1㎡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상호정산하지 않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일반특별공급/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2015. 06. 16(화)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5. 06. 16(화) 16:00 이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당첨자 발표 결과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 가능성으로 인하여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제19조 제7항 신혼부부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 노부모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6. 11)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를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②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분
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 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의 7에 의한 경우는 제외됨.
① 사업주체가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 19조의 3부터 제19조의 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③ 사업주체가 제19조의 3부터 제19조의 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 19조의 3부터 제19조의 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공급별 공급세대수

구분	공급 기준	59.8769	74.7748A	74.5290B	74.5123C	74.8038D	84.6585A	84.2922B	84.5391C	합계
일반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의 10%	24	11	7	7	1	16	3	-	6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 주택형의 10%	24	11	7	7	1	16	3	-	69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의 10%	24	11	7	7	1	16	3	-	69
노부모	전 주택형의 3%	3	2	2	2	2	8	1	-	20
소 계		75	35	23	23	5	56	10	0	227

▶ 일반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제한은 없으며,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6. 11)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단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한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요건 등 일부항목 배제)
- 장애인 : 「장애인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기타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강원도에서 도정시책 기여자로 선정하여 추천한 자), 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탈주민 등
· **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직계자녀 3명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단, 배점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정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2014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

· 소득기준

구분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무직자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세무서,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입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의 소득을 합산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제1순위로 청약 불가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및 광역권(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일반/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단독세대 등 해당세대)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발급)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는 제외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1.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일반공급

▶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어도 19세 이상인 자는 단독세대주로 봄)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삼척시)거주자가 우선하며, 광역권(강원도) 신청자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삼척시 및 강원도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삼척시 및 강원도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삼척시 및 강원도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되며, 이로 인해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2015.06.0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인정)	2015. 6. 17(수)	▶ 인터넷 접수 (09: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이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은행 접수 (09:00~16:00) - 1순위만 해당(2순위 제외) - 청약통장 해당 은행지점 방문 신청	▶ 발표일시 : 2015. 6. 24(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대화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공통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2015. 6. 18(목)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9:00~17:30으로 변경됨)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제4항)

구분	삼척시 거주자	강원도 거주자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500만원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13.05.3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의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위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 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만을 소유한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1.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2.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012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중 1층(1층이 없는 경우 주택형은 해당 층 최저층) 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접수시 1층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람
3. 1순위
   · 1순위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함.
4. 2순위
   ·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 · 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 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2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비치) · 입주자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 · 초본 등,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대상	청약신청금	접수장소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및 은행 창구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apt2you.com – 청약자의 거래 은행 본점 또는 지점 창구 신청 접수	– 인터넷 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하나,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 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 청약자 : 가능한 청약지역 소재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 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2015. 06. 25일부터 (시간 : 평일 09:00~16:00, 토 · 일 ·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자동환불 미 신청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제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공통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시에는"순위(1순위 가점제 → 1순위 추첨제 → 2순위)", "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그 외 강원도 거주자)"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당첨자 사실 조회
	이용기간	2015. 06. 24 ~ 2015. 07. 03(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1369[서비스번호 : 5#]
	이용기간	2015. 06. 24 ~ 2015. 07. 03(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 06. 24(수)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삼척교동_입주자모집공고_1506011_출고re.indd 7-8 2015-06-11 오후 8:56:12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15. 06. 29(월) ~ 2015. 07. 01(수) (3일간, 10:00 ~ 16:3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악도 및 문의전화 참조)
· 문의전화 : 033-573-2999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002-743279	대한토지신탁㈜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에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본인계약 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 입금확인증(※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완료후 입금증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기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처리되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 후에라도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되지 않음 (2009. 4. 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삼척시 및 강원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예정임(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일부 포함)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월 : 2018년 03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 하자보수는 주택법 46조, 동법 시행령 5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회의실, 북라운지, 주민운동시설2개소(실내1개소, 실외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등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 시트지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실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장판지,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침실 붙박이장(각 주택형별 1개소), 드레스룸장(도어 포함), 발코니 선반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배기 덕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59.8769	74.7748A	74.5290B	74.5123C	74.8038D	84.6585A	84.2922B	84.5391C
금액	17,712,000	22,258,000	21,981,000	21,941,000	22,067,000	25,611,000	25,408,000	26,057,000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LG선택가능)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 위치 선택	판매가	비고
59.8769	ALT-1	거실+침실1	3,50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4,75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4,75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50,000	
74.7748A	ALT-1	거실+침실1	3,75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5,10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5,10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80,000	
74.5290B	ALT-1	거실+침실1	3,55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4,90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4,90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50,000	
74.5123C	ALT-1	거실+침실1	3,75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5,10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5,10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80,000	
74.8038D	ALT-1	거실+침실1	3,75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5,10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5,10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80,000	
84.6585A	ALT-1	거실+침실1	3,80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5,15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5,15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800,000	
84.2922B	ALT-1	거실+침실1	3,60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4,95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4,95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00,000	
84.5391C	ALT-1	거실+침실1	3,800,000	택1
	ALT-2	거실+침실1+침실2	5,150,000	
	ALT-3	거실+침실1+침실3	5,150,000	
	ALT-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800,000	

2. 빌트인 가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판매가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삼성TBI(RS674CHQFSR)	4,600,000	택1
		LG BIS (R-L712JCS)	5,100,000	
		전면판넬	1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HBRK265VRS)+키큰장	1,500,000	택1
		LG(R-D222WW/NW)+키큰장	1,500,000	
	빌트인 전기오븐	삼성 스마트오븐(HSB-N361B)+하단서랍	470,000	택1 쿡탑하단 설치
		LG 광파오븐(MZ941CB)+하단서랍	450,000	
		동양매직 전기오븐(EONB420M)+하단서랍	450,000	
	하이브리드 쿡탑	동양매직 가스하이브리드쿡탑(GRA-BH300H)	590,000	택1
		동양매직 인덕션하이브리드쿡탑(ERA-B31HE)	690,000	

3. 붙박이 가구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위치	판매가	비 고
74.7748A	붙박이장 (여닫이)	침실1	1,500,000	
74.5290B	붙박이장 (여닫이)		2,350,000	
74.5123C	붙박이장 (여닫이)		1,500,000	
74.8038D	붙박이장 (여닫이)		1,600,000	
84.6585A	붙박이장 (여닫이)		1,600,000	
84.2922B	붙박이장 (여닫이)		1,800,000	
84.5391C	붙박이장 (여닫이)		1,800,000	

4. 현관중문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위치	판매가	비 고
59.8769	현관중문 (1도어 금속 슬라이딩)	–	650,000	
74.7748A	현관중문 (1도어 금속 슬라이딩)		650,000	
74.5290B	현관중문 (1도어 금속 슬라이딩)		650,000	
74.5123C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900,000	
74.8038D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900,000	
84.6585A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900,000	
84.2922B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900,000	
84.5391C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900,000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계약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주택형별 기본제공되는 일반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배관용 슬리브,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기본 설치 : 59-거실 에어컨배관용 슬리브,침실1 냉매매립배관 / 74A,C,D-거실,침실1 에어컨배관용 슬리브 / 84A,C-거실,침실1 에어컨배관용 슬리브 / 74B,84B - 거실 냉매매립배관, 침실1 에어컨배관용 슬리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하이브리드쿡탑 선택시 기본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으며 도배 마감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전기오븐 선택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구성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의 벽,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본인 가상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II)공급계약서에 준함.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우리은행	1005-002-728241	대림산업㈜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입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건우디앤씨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건우디앤씨이며, 대림산업㈜는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건우디앤씨]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건우디앤씨]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건우디앤씨 및 시공사 대림산업㈜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수인의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을"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 통보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건우디앤씨]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한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2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순위 당첨자)함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인쇄물,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 및 제시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 양질의 대체제품이 있을 경우,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내 건립세대(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또한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및 모형의 충분한 숙지 및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바람
· 당사의 분양홈페이지상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보존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삼척시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섀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함
· 본 아파트는 삼척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학생수용여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 학교시설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나 입주시 해당 관계기관에 문의 바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특화시설 모형도, CG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 속도 ·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부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램프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 시공시 사용자의 편의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품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치 및 개소를 배치도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변경 및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소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전 개설 완료 예정이며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전 미개설시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공급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게시할 예정임
· 주변시설(도로 및 진입로 포함)과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현장 여건 및 주위 환경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에 인접한 해당 동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카탈로그 단지배치도, 모형 등 참조)
· 대지 인접도로(통행차량 소음 등) 및 통로(차량, 보행 포함), 보행계단에 의한 보행자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지상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소방관계법에 의하여 열수 없는 구조이며, 환기검토에 의해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 중 일부에 대하여 창문형 자동폐쇄장치가 설치 됨.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로 인해 미세한 진동 및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정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은 풍동 실험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 외부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임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단지배치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대피공간의 창호, 세대내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에 의거 대피공간이 설치된 세대중 4층 이상의 대피공간 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시공되고 1~3층 세대는 대피공간 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또는 별도 재질의 문이 설치될수 있음)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입주는 엘리베이터 이동을 기본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동을 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단위 : 원)

구분	면적(㎡)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
사업부지	26,442	㈜나라감정평가법인	17,927,676,000
		㈜대한감정평가법인	18,112,770,000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장 소재지
주택건설 공사감리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434,721,000 (VAT별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3층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12,260,000 (VAT별도)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42, 513
소방시설/정보통신 공사감리	㈜한일엔지니어링	150,602,725 (VAT별도)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7-16(원당동)

■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101,558,520,000	01282015-101-0007200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약관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 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섀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보증채무이행방법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명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1492513)
시공회사명	대림산업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0084915)

■ 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daelim-apt.co.kr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3-1 ■ 분양문의 : 033)573-299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삼척교동_입주자모집공고_1506011_출고re.indd 11-12
2015-06-11 오후 8:56:13

전세대 중소형으로 구성된 723세대 대단지 여유로운 배치로 쾌적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합리적인 단지배치로 단지 곳곳에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돼
입주자만의 생활의 편의와 여유를 제공합니다.

e편한세상 삼척교동		총 723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59	59.8769	242
74A	74.7748	113
74B	74.5290	75
74C	74.5123	71
74D	74.8038	19
84A	84.6585	168
84B	84.2922	30
84C	84.5391	5
합계		723

▶ 주택형 컬러는 배치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필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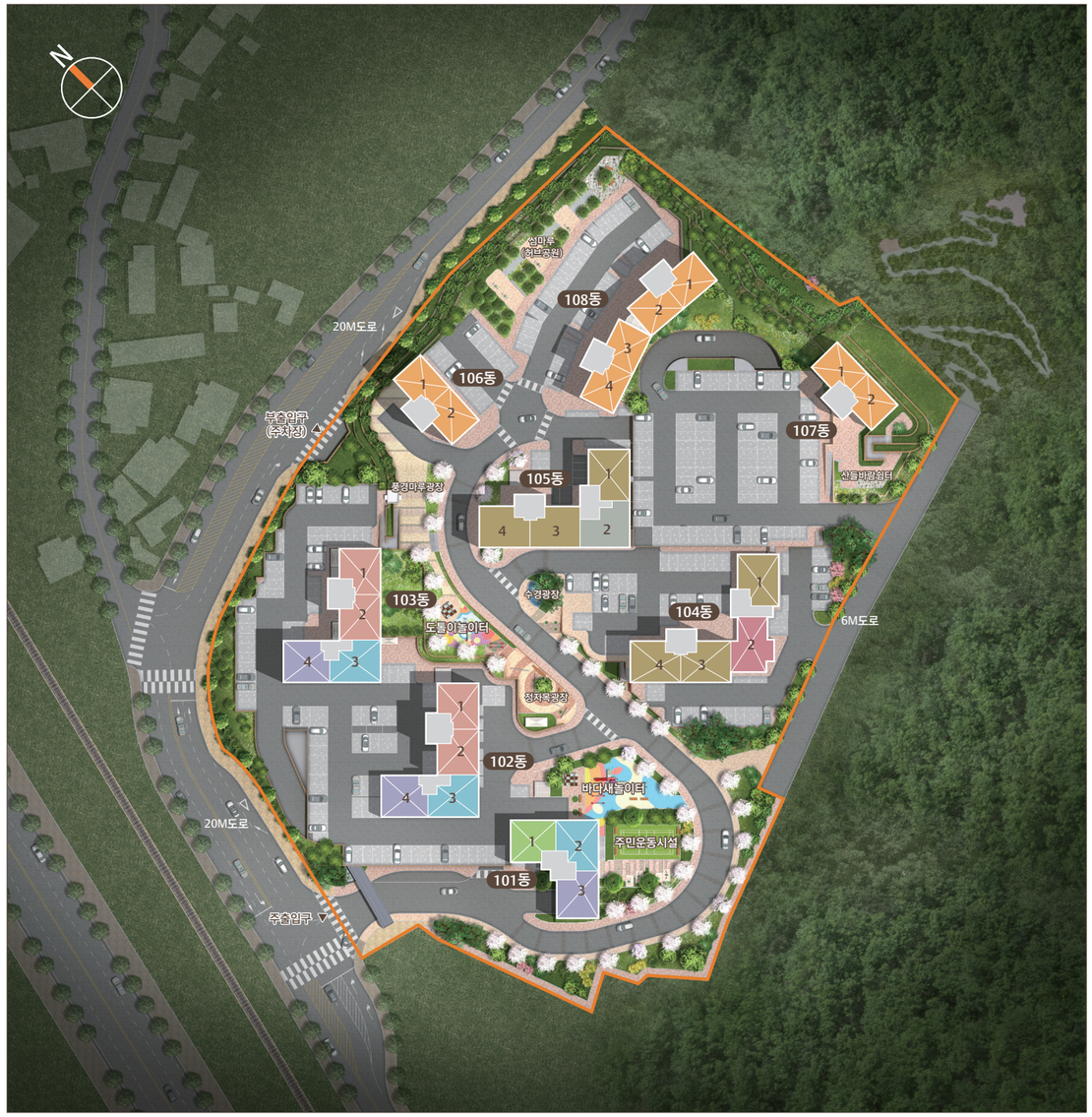

※ 본 홍보물의 단지 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색채는 실제 시공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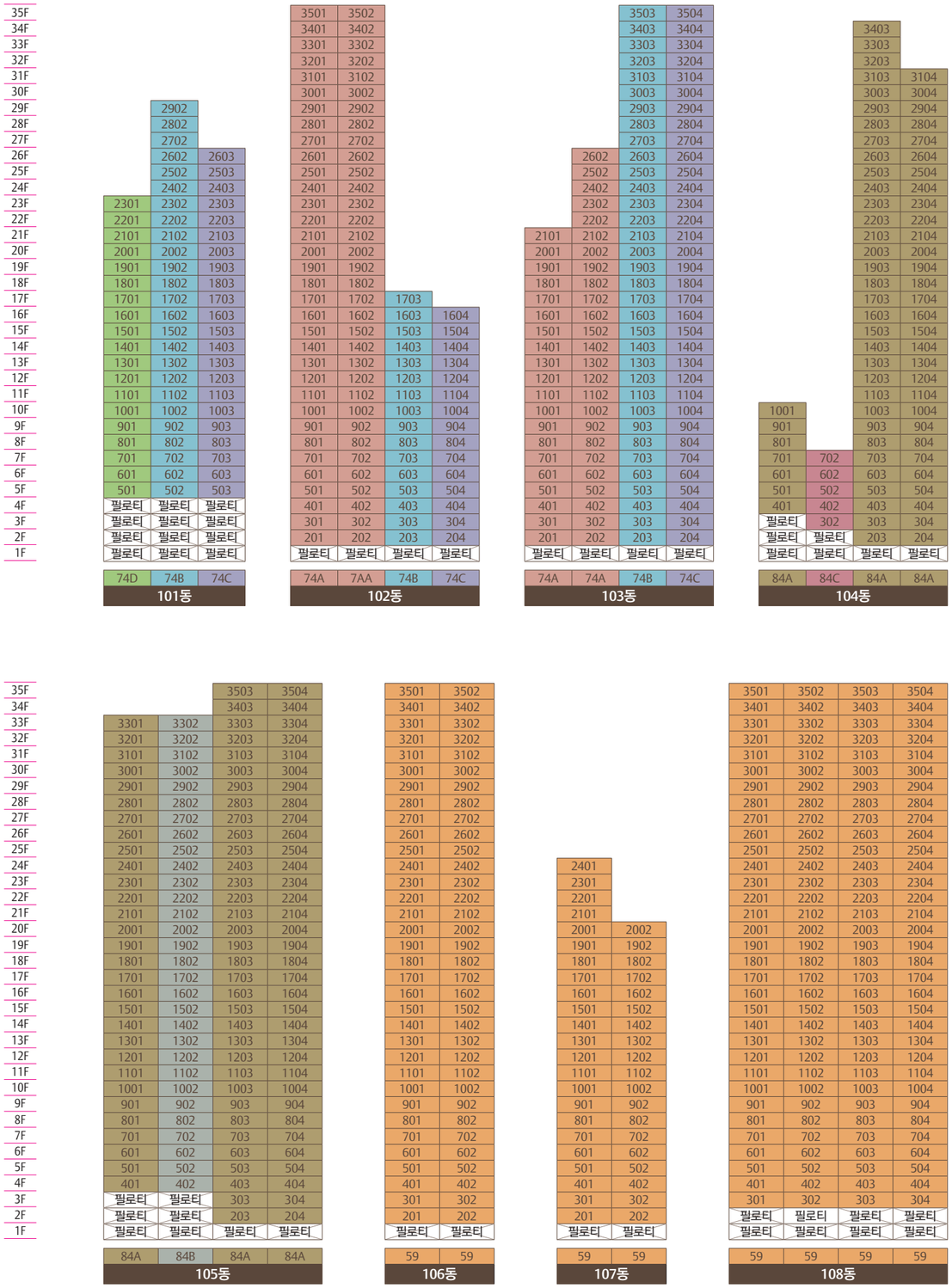

※ 본 홍보물의 동·호수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일부동 라인에만 적용됩니다.

59.8769m² (242세대)

거실과 주방의 개방감을 극대화한
맞통풍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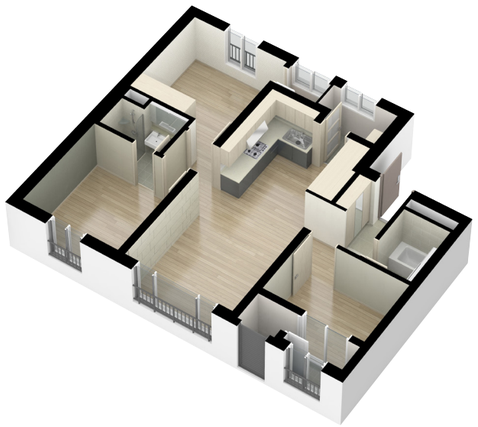

74.7748m² A (113세대)

탁 트인 거실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3Bay 판상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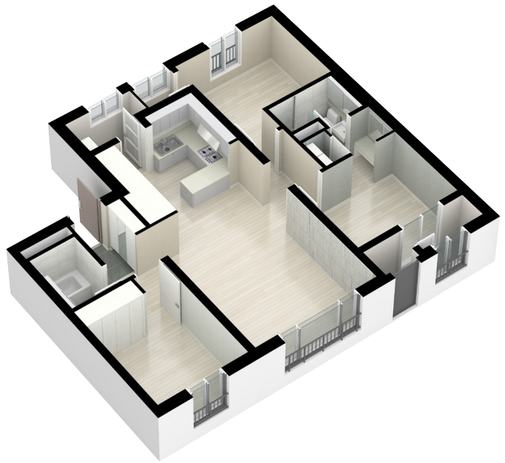

74.5290m² B (75세대)

자녀와 부부공간을 분리한
독립적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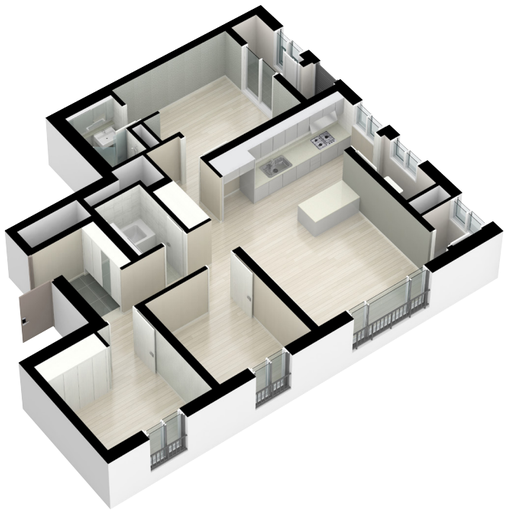

74.5123m² C (71세대)

탁 트인 거실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3Bay 판상형 평면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분양가 제외품목이오니 모델하우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 디자인을 위해 발코니 턱, 발코니 새시 및 난간 설치는 동일 평형이라도 호수 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설계내용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4.8038m² D (19세대)

탁 트인 거실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3Bay 판상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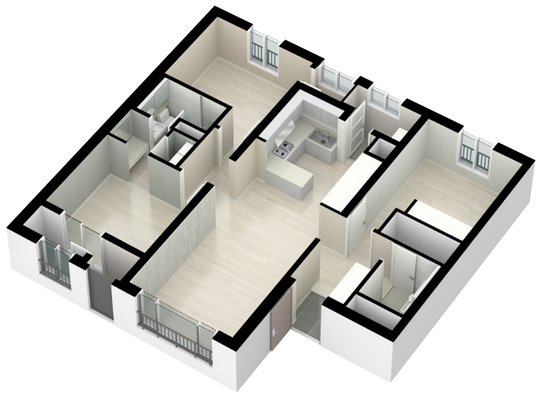

84.6585m² A (168세대)

넉넉한 수납공간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3Bay 판상형 평면

84.2922m² B (30세대)

자녀와 부부공간을 분리한
독립적 평면

84.5391m² C (5세대)

자녀와 부부공간을 분리한
독립적 평면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분양가 제외품목이오니 모델하우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 디자인을 위해 발코니 턱, 발코니 새시 및 난간 설치는 동일 평형이라도 호수 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설계내용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척교동_입주자모집공고_1506011_출고re.indd 15-16
2015-06-11 오후 8:56:26